

113-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정정 고시

수원시 고시 제2009-09호(2009.1.12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. 8. 25.에 조합설립 인가되고, 수원시 고시 제2012-156호(2012.06.1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수원시 고시 제2022-232호(2022.6.3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된 수원시 세류동 817-72번지 일원의 113-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한 (수원시 고시 제2022-232호) 내용에 아래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내용 정정 후 고시합니다.

2022년 10월 6일

수 원 시 장

■ 정정사유

- 수원시 고시 제2022-232호(2022.6.3.) 9.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국·공유지 상 지번 및 면적 오기로 인하여 정정하는 사항임.

■ 정정내용

-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국·공유지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현 황	공부면적 (㎡)	소유면적 (㎡)	소유비 율	무상양도 면적(㎡)	제외면적 (㎡)	소유자	비고
기정	권선구 세류동	1033-093	도로	도로	1,685.00	1,685.00		1,503.00	182.00	국토교통부	
	권선구 세류동	1033-095	도로	도로	190.00	190.00		190.00		국토교통부	
	권선구 세류동	1033-096	도로	도로	124.00	124.00		54.00	70.00	국토교통부	
변경	권선구 세류동	1033-92	도로	도로	86.00	86.00		3.00	83.00	국토교통부	1033-3에서 분할
	권선구 세류동	1033-93	도로	도로	1,685.00	1,685.00		1,484.00	201.00	국토교통부	1033-3에서 분할
	권선구 세류동	1033-94	도로	도로	16.00	16.00		16.00		국토교통부	1033-3에서 분할
	세류동1033-3번지 소계				1,787.00	1,787.00		1,503.00	284.00		
	권선구 세류동	1033-95	도로	도로	190.00	190.00		120.00	70.00	국토교통부	1033-11에 서 분할
	권선구 세류동	1033-96	도로	도로	124.00	124.00		124.00		국토교통부	1033-11에 서 분할
	세류동1033-11번지 소계				314.00	314.00		244.00	70.00		

※ 사업시행인가 관련 기타 관계도서는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재개발팀(☎031-228-2417) 및 113-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031-222-5216)에 비치하고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및 재개발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소관부서	도시정비과	담당자 직.성명	주무관 정재웅	전화번호	031-228-2417
-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